

파주시읍·면·동·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-193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03. 12. 2.

제출자 : 파주시장

□ 제안이유

- 탄현면 통일동산 조성공사가 마무리 됨으로써 사업준공을 위한 확정 측량을 시행하고 있으나, 사업지구내 일부필지가 2개리에 걸쳐 있어 향후 사업 준공후 토지소유자의 재산권행사 및 공부관리 등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탄현면 성동리, 법흥리 리간 경계를 도로를 기준으로 변경·확정하고자 함.

□ 주요관자

- 법흥리 29필지 149,040.2㎡ ⇒ 성동리로 편입
- 성동리 1필지 21,594.5㎡ ⇒ 법흥리로 편입

변 경 (前)				변 경 (後)			
리	필지수	면적(㎡)	비고	리	필지수	면적(㎡)	비고
계	30	170,634.7		계	30	170,634.7	
법흥리	29	149,040.2		성동리	29	149,040.2	
성동리	1	21,594.5		법흥리	1	21,594.5	

파주시읍·면·동·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파주시읍·면·동·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[별표]의 탄현면 관할구역중 “성동리”를 “성동리 일원과 법흥리에서 편입되는 성동리 298-7~198-17, 694, 695, 696, 697, 698, 699, 700, 692-21~692-22, 산71-2~산71-10번지 29필지 149,040.2㎡를 포함한 지역과 법흥리로 편입되는 성동리 1631-1번지 1필지 21,594.5㎡를 제외한 전지역”으로 하고, “법흥리”를 “법흥리 일원과 성동리에서 편입되는 법흥리 1631-1번지 1필지 21,594.5㎡를 포함한 지역과 성동리로 편입되는 법흥리 298-7~198-17, 694, 695, 696, 697, 698, 699, 700, 692-21~692-22, 산71-2~산71-10번지 29필지 149,040.2㎡를 제외한 전지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9

파주시읍·면·동·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이 개정조례안은 2003년 12월 2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
2003년 12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

1. 제안이유

- 탄현면 통일동산 조성공사가 마무리됨으로써 사업준공을 위한
확정 측량을 시행하고 있으나, 사업지구내 일부필지가 2개리에
걸쳐 있어 향후 사업 준공 후 토지소유자의 재산권행사 및 공부
관리 등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탄현면 성동리, 법흥리
리간 경계를 도로를 기준으로 변경·확정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법흥리 29필지 149,040.2m² ⇒ 성동리로 편입
- 성동리 1필지 21,594.5m² ⇒ 법흥리로 편입

변 경(前)				변 경(後)			
리	필지수	면적(m ²)	비고	리	필지수	면적(m ²)	비고
계	30	170,634.7		계	30	170,634.7	
법흥리	29	149,040.2		성동리	29	149,040.2	
성동리	1	21,594.5		법흥리	1	21,594.5	

3. 검토의견

○ 동 개정조례안은 탄현면 성동리, 범흥리 일원에 조성중인 통일동산 3단계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준공을 위한 확정측량을 시행중이나 일부 필지가 성동리와 범흥리 2개리에 걸쳐있는 관계로 현 상태대로 사업준공 시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 등에 많은 불편이 예상되어 주민불편 해소와 공부관리 등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성동리와 범흥리 리간 경계를 도로를 기준으로 변경·확정하고자 하는 것임.

○ 금번 리간 경계 조정으로 범흥리 29필지 149,040.2㎡를 성동리로 편입하고, 성동리 1필지 21,594.5㎡를 범흥리로 각각 편입하는 사항임.

※ 행정구역 변경조서 첨부

○ 지방자치법 제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리의 구역은 자연의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·분합 할 때에는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적 근거에는 문제점이 없음.

○ 또한, 금번 경계 조정은 통일동산조성사업 준공을 위한 확정측량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의 건의에 따라 관련부서(지적과)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며,

○ 리간의 경계조정을 통해 토지소유자들에게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주민편의를 위하고 공부관리 등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보여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임.

행정구역 변경조서

□ 빽흥리 → 성동리

행정구역 변경전						변경후		
순위	리	지번	지목	면적(m ²)	소유자	리	지번	비고
1	빽흥	775	전	1,541	토지개발공사	성동	298-7	
2	“	775-1	구	24	“	“	298-8	
3	“	776	답	333	“	“	298-9	
4	“	776-1	구	321	“	“	298-10	
5	“	776-2	답	149	“	“	298-11	
6	“	777	전	2,085	“	“	298-12	
7	“	777-1	구	12	“	“	298-13	
8	“	777-2	“	32	“	“	298-14	
9	“	778	전	1,379	“	“	298-15	
10	“	779-5	“	182	“	“	298-16	
11	“	811-15	“	3,954	“	“	298-17	
12	“	1764	공	34,908.8	파주시	“	700	
13	“	1765	도	406.9	“	“	697	
14	“	1766	공	1,447.8	“	“	696	
15	“	1767	임	21,682.2	“	“	699	
16	“	1768	도	691.3	“	“	698	
17	“	1769	임	5,916.2	“	“	695	
18	“	1770	도	4,463.7	“	“	692-21	
19	“	1771	종	7,593.5	재단법인천주교 서울대교구유지재단	“	694	
20	“	1772	도	1,489.8	파주시	“	692-22	
21	“	산69-13	임	4,516	토지개발공사	“	산71-2	
22	“	산69-27	“	17,812	“	“	산71-3	
23	“	산69-28	“	14,719	“	“	산71-4	
24	“	산71-4	“	5,935	“	“	산71-5	
25	“	산173	“	3,718	“	“	산71-6	
26	“	산73-5	“	5,725	“	“	산71-7	
27	“	산174	“	7,733	“	“	산71-8	
28	“	산74-1	“	165	“	“	산71-9	
29	“	산74-2	“	105	“	“	산71-10	
계		29필지		149,040.2				

□ 성동리 → 범흥리

행정구역 변경전						변경후		
순위	리	지번	지목	면적(m ²)	소유자	리	지번	비고
1	성동	637	대	21,594.5	토지개발공사	범흥	1631-1	
계		1필지		21,594.5				

지방자치법

(일부개정 2000.1.12 법률 제6115호 행정자치부)

제4조 (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) ④리의 구역은 자연의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·분합할 때에는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